

() 판인생략 서울특별시 예규 발령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1889
 시행일자 1993. 11. 9
 정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재계장		
기안	이종범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발령

1.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개정안 1부. 끝.
 (제 2 안)

예규 제 183 호

수신 : 홍보관
 참조 : 홍보1담당관
 제목 : 시보게재

1. 별첨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183 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신 : 재개발과장
 제목 : 예규발령 통보

1. 재개 11150-732(93. 11. 5)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

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183 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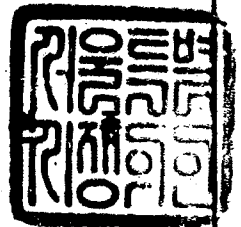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제142497호(공민142497호)정경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9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개발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수입·지출·기금관리·기금운용·보고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지정)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권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3조(징수결정 및 봉지) ①기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수입을 징수·결정할 때에는 밑지 제1호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부에 등재하고 고지서를 발급 봉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수입은 금융기관의 이시발생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의하고 고지서 발급을 생략한다.

②착오·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미수납액의 이월) 기금출납공무원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명해 연도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지출방법) ①계약에 의한 기금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입 및 지출집의식에 의하고, 일반적인 기금지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집의식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식에 의하여 결당한 계좌에 대해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함)은 다음 회계 연도의 공공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 촉진 등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 운용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총괄부
2. 수입부
3. 지출부
4. 지급명령발행부
5. 지출원인 행위부
6. 추산부
7. 기금배정부
8. 위탁금 관리대장
9. 용자금 관리대장

제8조(기금용자 대상자) 도시재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제60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용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공사·법인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11조에 의한 제3개발지구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법 제12조·법 제17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9조(용자형식) 기금의 용자는 통서에 의한 내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용자계획 공고) 시장은 기금용자 계획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용자신청 20일전까지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용자신청 10일전까지 기금용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11조(용자신청) 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4호제1항의 재개발사업기금 용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건축물 및 공공시설 설치 관련비용과 용자금 사용계획 내역 별도명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용자방법 및 위탁금융기관의 임무) ①기금의 용자는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용지는 시장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재개발사업 기금 위탁·운용 협약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시식의 재개발사업 기금수용업체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시식의 재개발사업 기금용자대상자 선정·통보서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보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위탁금융기관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용자대상자의 상환능력등을 검토하여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용자에 따른 원리금의 기간에 상환에 책임을 지며, 용자대상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등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한 용자대상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간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용자할 수 없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탁금융기관은 제15조제3항에 의한 시장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날 부터 30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대상자에 대한 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결정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은 법규 및 인가된 사업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차별 용자금 누계액은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용자금액의 결정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용자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용자 가능한 신청자 전원에게 분배하되, 그 기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의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용자규모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text{산식} = \frac{\text{신청자의 공공시설비 투자규모}}{\text{신청자 전원의 공공시설비 투자규모}} \times \text{용자가능기금총액}$$

4. 공공복리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특별회사가 50퍼센트이상 투자한 공시 또는 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용지하고 그 규모는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용자금의 한도액) 용지신청자에게 용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재개발사업비용 건축비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제14조(용자금의 상환)용자금의 상환은 5년으로 하고 3년기차 2년 상환한다.

제15조(기금용자결정 취소통) ①시장은 기금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용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공계획일 부터 2월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인가 또는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기금용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은 개인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용자금(이자포함)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승인 받은 사업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용자금을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시행자의 명의를 변경된 때. 다만,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구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용자협의 등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협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무국장·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17조(협의회 운영)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제12조제6항에 의한 용자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 대한 협의요구서에 의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입·세출의 보고) ①시장은 세입·세출계산총명서를 작성하여 세입은 분기별, 세출은 매월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 기금결산서와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 지출·공사·물품구매의 계약행위와 장부·서칙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수결의서

증제 호

출납공무원	발	의	년	월	일	(인)	
	고	지	서	번호		(인)	
계 장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정	수	부	통	기	년	월
계	고	지	서	번호	계	호	
	19 년도		(관)	(항)	(목)		
제개발사업기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임 금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W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납입자주소성명 </div>							
의							
요							

(별지 제2호 서식)

수입 및 수출 계약서

증서 번호		계 정 번호		출 납 명 령 권		19 년 도 시 제 개 발 사 업 기 금		계 정 번호		수 입 금 무 형	
						세 출 과 목					
발 의		(인)		관				발 의		(인)	
원인행위부등기		(인)		업				시출부등기		(인)	
주 문		(인)		세 형				차 입 명 령 발 행 부 등 기		(인)	
납 분		(인)		확				차 입 명 령			
경 수		(인)						번 호		제 호	
물 품 출 납 부 등 기		(인)									
수 입 인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알 름 </div>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연기제 시한을 준함 주소											
성명 (인)											
상 기 금 액 청 구 함 년 월 일 성명 (인)						상 기 금 액 청 구 함 년 월 일 성명 (인)					
(계좌번호)											
주 산 (인) 필		은행				시 점					
		통장번호									

주 :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본서식에 의한다.
(이하동단)

지 출 금 의 서

증 제 호		송 납 영 령 권		19 年 月 日	계	계	출 납 과 무 한
계	장	과	정	19 年 月 日	계	계	출 납 과 무 한
				19 年 月 日			
				세 출 외 복			
발 의	(인)		권	발 의		(인)	
원 인 행 위 부 기	(인)		항	지 출 부 기		(인)	
계 약	(인)		세 항	지 출 명 령 부 기		(인)	
청 수	(인)		목	지 출 명 령 호		세 호	
수 입 인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일 금 </div>						
적 요							
세 주	주소 상 호 상 명						
영 수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年 月 日 상 명 (인)						
추 산 평 인 (인)							

주. 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지출결의서는 본 시식에 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계개발사업기금용자금신청서

○ 신청자 : . 지구명
. 주소
. 대표자

○ 신청금액 : 금 원정

₩

○ 취급 희망절포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계개발사업기금 용자금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내역서 (건축물 및 공공시설 설치 관련비용과 용자금 사용계획 내역 별도명시)
 4. 기 타

서울 특별시장 귀하

재개발사업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

지 구 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주 소							
건축 현황	사업비	시행면적 (㎡)	건축연면적 (㎡)	층 수	용 도	비 고	
용자 내용	용자총액	대출일자	상환기간	대출금리	용자금용도	취급절포	
			자: 지:	년 %			
상 환 실 적							
회수	년 월 일	상 환 금	비 고	회수	년 월 일	상 환 금	비 고

(별지 제7호시식)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대한협의요구서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첨부서류

1. 의견서 1부
2. 신청서 각 1부
3. 기 타 (). 곱.

서울특별시장

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협의회 귀중

(별지 제8호서식)

협 의 서

건 명 :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협 의 내 용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건	비 고

19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자금관리운용규정개정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 불가피한 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되로서 도시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자금운용계획수립의 합리화를 기하고서 재개발사업자금운용협약에서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자금제리에 필요한 장부·서식을 현행에 맞게 개정·신설함(안 제7조).
-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단체등에 대한 보충은 일반행위로 직권사행하므로 삭제함.
- 라. 재개발사업조례중 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에 따라 용지방법 및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함(안 제12조).
- 마. 자금용자의 공정성·합리성을 기하고서 도시재개발사업자금운용협약의 위원을 국장급으로,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정함(안 제16조).
- 바. 세입·세출 보고기일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시재개발법·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중개정규정

특별시

사업소직제관련 조례 및 공사설치조례등
기구의 폐지·신설에 따른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변경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112

이정근 (222. 1. 21)

(정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급	시		장	
종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이용범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중개정규정발령

1.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예규안 / 부, 끝.

584호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584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시민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시민12311-63(94.1.21)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584호 (생략)

서울특별시장

